

'93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93년 1월부터 시행할 '93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고시하였다.

사업별 지원규모를 보면 석유비축에 1,130억원, 장거리 송유관 건설에 493억원, 국내외 자원개발에 785억원, 도시가스사업에 606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1,363억원, 석탄산업지원에 2,690억원, 그리고 대체에너지보급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등 기타사업에 556억원과 석유수입손실보전에 2,072억원등 총 9,69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고시상 특징은 석유비축사업, 장거리송유관건설 및 국내외자원개발등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급기반구축과 신도시지역난방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도

시가스사업등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석탄산업구조 조정사업에 대한 지원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탄가격안정을 위하여 2,69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용자금리는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석유사업기금의 용자업무 취급수수료를 현행 1.5%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등 전문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 확정시 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책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였다.

1993년도석유사업기금운용관리요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집행을 위한 '93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3년 1월 4일

동력자원부장관

1. 목적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향후 수정계획 포함)의 적정집행을 위한 용자·지원·채무보증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가.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다른 고시·공고·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됨.

나. 각 사업별 주무부서는 세부시행에 관하여 따로 고시·공고·지침을 정할 수 있음. 이경우 각 주무부서는 고시·공고·지침내용을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용어의 정의

가. 투자: 기금이 스스로 석유비축, 저장, 수송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련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

나. 용자: 기금이 에너지관련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다. 보조: 기금이 에너지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지원·손실보전을 포함한다.

라. 대여: 용자취급기관이 기금의 실수요자에게 용자할 수 있도록 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기금을 용자취급기관에 용자하는 것.

4. 기금사용요구서 제출

가. 동력자원부(기금관리부서)는 익년도 기금사용요구서 작성지침을 4월말까지 동자부내 각실·국 및 공사에 시달하고

나.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익년도 기금사용요구서를 5월말까지 동자부(기금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5. 예산의 집행

가. 동력자원부(기금관리부서)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항목별 금액 범위내에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 변경시에도 같음.

나. 공사는 통보된 월별자금 집행계획범위내에서 자금을 집행

6. 기금사업 예산명세서 작성

공사는 기금운용계획중 공사가 기금에서 직접 시행·집행하는 석유비축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7. 기금사업 예산명세서의 집행

가. 공사의 사장은 기금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사의 명의로 이를 집행(계약, 관리, 처분등)할 수 있음.

8. '93년도 기금지원 사업내역

나. 공사의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산과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단, 건설 가계정의 부대비항목내 인건비목 상호간 및 경비목 상호간의 전용은 공사의 사장이 할 수 있음.

다. 공사의 사장은 비축기지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력자원부장관(주무부서)과 협의하여야 함.

라. 공사의 사장은 비축석유의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비축용 석유매출금액으로 비축유를 재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석유의 대역(품질 및 물량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석유의 구입비도에 준함.

<투 자>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지원금액(억원)	투자대상자
1. 석유비축사업	(1) 비축시설건설	853	석 유 사 업 기 금
	- 원유비축시설 건설	584	
	- 제품비축시설 건설	157	
	- LPG 비축시설 건설	112	
	(2) 비축시설 관리	267	
	(3) 비축유 구입	10	"
	소 계	1,130	
2. 장거리 송유관건설사업	(1)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	43	(주) 대한송유관공사
합 계		1,173	

<용 자>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지원금액(억원)	용자대상자
3. 국내외자원개발사업	(1) 국내대륙봉 개발	105	한국석유개발공사 개발 참여 업체 "
	(2) 해외유전개발	434	
	(3) 해외자원개발 (해외유전개발 제외)	241	
	소 계	780	
4. 도시가스사업	(1) LNG 공급기반 구축	473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냉방기기설치자
	(2) 공급자 배관망	111	
	(3) 가스냉방	22	
	소 계	606	
5.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1) 집단에너지 공급	979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 에너지절약설비제조자및설치자
	[신도시지역난방 서울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열병합발전]	605	
		54	
		320	
	(2) 절약시설 설치	384	
	[산업체절약시설 주택단열개수 건물절약시설]	310	
		30	
44			
소 계	1,363		

6.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	(1)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	450	(주) 대한송유관공사
7.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 대체에너지이용촉진	100	· 이용시설 설치자 및 기자재생산자 · 생산공급자 또는 협 동조합
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20	기술개발사업수행자 "
	(2)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30	
	소 계	50	
9. 석탄산업지원	(1) 석탄광개발	60	석 탄 광 업 자
	소 계	60	
합 계		3,409	

〈보 조〉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지원금액(억원)	보조대상자
10. 원유도입선다변화	(1) 원유도입선다변화	68	석 유 정 제 업 자
11. 석유품질관리	(1) 석유품질관리	9	석 유 품 질 검 사 소
12. 석유수입손실보전	(1) 석유수입손실보전	2,004	석유정제·수입업자
13. 석탄산업지원	(1) 폐광대책	495	폐 광 업 자 및 근 로 자 석 탄 광 업 자 및 근 로 자
	(2) 탄가대책지원	2,135	
	소 계	2,630	
14.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 크린에너지토피아	10	사업참여자(실증 및 이용시설설치자)
1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	30	전 문 관 리 기 관 " 에 너 지 연 구 센 타 에 너 지 관 리 공 단
	(2) 에너지절약기술개발	30	
	(3) 에너지연구센타지원	10	
	(4) 자원활용관 지원	60	
	소 계	130	
16. 석유개발공사운영	(1) 석유개발공사운영비	244	한국석유개발공사
17. 국내의자원개발	(1) 석유탐사선 건조	5	한국 자원 연구 소
합 계		5,100	

9. 융자조건

가. 국내 대륙붕개발 및 해외유전개발 : 별도 고시(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의함.

나. 해외자원개발(해외유전개발 제외)

- 융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6%(대여금리 5%)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다. 도시가스사업
- 융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5% 이내(대여금리 4%)
-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내
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 융자규모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이자율

- 집단에너지사업 : 연리 8% 이내(대여금리 7%)
- 주택단열사업 : 연리 10% 이내(대여금리 9%)
- 산업체 절약시설, 건물절약시설 : 연리 5% 이내(대여금리 4%)
다만,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10% 이내(대여금리 9%)
- 상환기간
 - 시설자금 :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최장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 운전자금 : 최장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이내
- 마. 장거리 송유관 건설사업
- 융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10%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내
바.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용자규모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70% 이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설치자는 제외)

○이자율

-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 연리5%이내 (대여금리4%)
다만, 운전자금에 대한 용자금리는 연리 10% 이내 (대여금리 9%)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용자금리는 용자취급기관 대
여금리에 준한다.

○상환기간

- 시설자금 :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다만, 소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최장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내
- 운전자금 : 최장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이내
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용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3% 이내 (대여금리 2%)
- 상환기간 :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용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3% 이내 (대여금리 2%)
- 상환기간 :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아. 석탄산업지원

○석탄광개발사업

- 용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6.5% 이내 (대여금리 5.5%)
- 상환기간 : 최장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이내

10. 용자 취급기관등

가. 투자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투자 또는 보조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나"항의 보조금 지원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급

나. 보조금 지원 취급기관

- (1) 석탄산업지원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2) 대체에너지보급,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의한 전문관리기관

다.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용자대상자에게 직접 용자하거나 "라"항의 대여용자 취급기관을 통하여 대여용자

라. 대여용자 취급기관

-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및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유전개발 제외), 석탄광개발사업 : 대한광업진흥공사

11. 기금의 대여

- ① 용자취급기관(공사포함, 이하같은)은 용자대상자의 용자신청을 받아 대여일 5 영업일전에 공사의 기금대여 요청. 이경우 공사는 대여요청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② 공사는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시점까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금액의 규모와 소진실적을 감안하여 대여액을 조정. 이경우 공사는 동력자원부와 협의하여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③ 기금 대여는 담보없이 월 3회로 하고, 대여일은 공사와 용자취급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12. 기금의 용자

가. 용자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본관리요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용자대상자에게 용자. 다만, 각 개별사업별로 필요시 본 고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에 의할 수 있음.

나. 공사가 직접 용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적용.

다. "나"항의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담보는 물적 담보를 생략하고, 용자대상자 발생의 약속어음으로 갈음하되, 용자취급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용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 또는 용자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할 수 있음.

13. 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연 4회 균등분할상환(3, 6, 9, 12월의 각 15일) 이자는 3개월 후(3, 6, 9, 12월의 각 15일)

14. 기금의 보조

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의 성질상 기성고에 따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취급기관은 매월 소요예산액을 파악하여 지원받은 자금중 정산잔액(에너지절약기술개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

나. 사업의 성질상 기성고에 따라 지원이 곤란하여 소요예산액을 파악, 지원한 경우 지원취급기관은 차년도에 전년도 지원받은 자금을 대하여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

15. 자금의 용도관리

가. 용자취급기관 및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은 지원받은 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공사는 용자

취급기관, 보조금지원 취급기관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조사를 할 수 있음.

나. 공사는 대여용자취급기관 및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사업의 기금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직접 시행

다.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의 용자상황을 익월 7일(농협중앙회는 익월 25일)까지 공사에 보고

라. 공사는 기금의 대여상황과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상황을 익월 10일(농협중앙회 용자상황은 익월말)까지 동력자원부에 보고

마. 기금을 대여, 용자, 보조받은 자(보조금지원 취급기관 포함)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용도의 사용한 금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공사는 즉시 회수하며 또한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16. 자금의 이월사용

가. 매 회계년도의 기금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도내에 기금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은 익년도 2월말까지(석탄산업지원중단가대책지원금의 경우는 6월말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가"항의 지출원인행위란 기금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용자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 공사 또는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승인을, 보조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 공사 또는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의 보조승인을 말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의 사업선정용, 석유비축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을 "가"항의 지출원인행위로 봄.

다. 국내대륙붕 개발 및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이월사용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력자원부고시 제92-78호('92.9.9)에 의거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1992년 12월 31일 현재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된 종전 고시에 의하여 계속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종전의 고시에 따라 용자된 자금 중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자조건을 적용한다.
4. 동력자원부고시 제91-10('91.2.22)호, 제91-11('91.2.22)호, 제91-43('91.8.20)호, 제91-44('91.8.20)호, 제91-71('91.12.31)호, 제91-72('91.12.30)호, 제92-2('92.1.17)호 제92-4('92.1.23)호, 제02-43('928.14)호, 제92-78('92.9.9)호, 제92-112('92.12.16)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

■ 시사용어 ■

경상수지

한 국가의 對外거래상태 지표...무역·무역外·이전收支 총합

한 국가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를 합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상품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것으로 그 차액이 플러스면 무역수지흑자, 마이너스면 무역수지적자라고 한다.

무역외수지는 은행 보험 항공기 선박등의 서비스 대금, 대외투자수익과 이자, 해외관광여행경비, 특허료등 서비스수출입에 따른 대외거래의 결과를 말한다.

이전수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이다.

경영수지는 통상 국제수지흑자 또는 적자의 기준이 된다. 국가간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매매, 기타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자본수지를 포함할 경우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부족한 돈을 외국에서 빚을 내 메워야한다. 이때 자본수지는 외채증가에 따라 흑자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 45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나타낸후 내년엔 30억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3년도 LPG 수급계획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필수 민생연료로서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LPG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 국내 LPG 수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국내 LPG 수요는 가정·상업, 운수, 도시가스용으로 전년대비 12.9%(프로판 16%, 부탄 8.0%) 증가한 5,242천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 LPG 공급측면에선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의 신·증설시설 본격가동으로 생산이 전년대비 30.8% 증가한 1,885천톤이 되는 반면 수입은 이로 인해 7.1%만 증가한 3,436천톤이 되어 수입비중이 전년도 69%에서 65%로 감소되며,

○ '93년중 도입가능한 장기계약물량은 3,630천톤으로서 가스종류별, 계절별 수요차이에 따른 과부족물량은 적기 현물도입, 프로판과 부탄간의 SWAP, 해외처분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동력자원부는 '93년도 월동기('93.10~'94.3) LPG 수급이 저장 및 수송시설확충의 한계등으로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93년 상반기중에 별도대책을 강구하여 관련업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사전대비해 나감으로써 월동기 LPG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92년 LPG용도별 소비실적(잠정)

- 가정·상업용 : 취사용보급의 한계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10.9% 증가에 그침.
- 도시가스용 :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43.2%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92년이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수송용 : 택시갯수의 증가(2.9%) 및 중형화(80%)에 따라 5.3% 증가
- 공업원료용 : 南海化學 및 韓國肥料의 비료제조용 수요(부탄) 급증과 동양나일론(프로판), 신화유화 등의 석유화학용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약 650%나 대폭 증가

<LPG 소비추이>

(단위 : 천톤)

	1991		1992			
		전년대비(%)	계 획	실적(잠정)	계획대비(%)	전년대비(%)
가정상업용	1,801	16.2	1,996	1,997	0.1	10.9
도시가스용	366	76.8	520	524	0.8	43.2
운수용	1,108	4.6	1,237	1,167	△5.7	5.3
산업용	275	34.8	375	311	△17.1	13.1
공업원료용	86	-	492	644	30.9	649
합	3,636	20.4	4,620	4,643	0.5	27.7
(공업원료용 제외시)	(3,550)	(17.5)	(4,128)	(3,999)	(△3.1)	(12.6)

2. '93년 LPG 수급계획

- 수요 : 전년대비 12.9% 증가한 5,242千톤(공업원료용 제외시 13.6% 증가)
 - ┌ 프로판 : 주로 가정상업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16.0% 증가
 - └ 부 탄 : 주로 운송용 및 산업용으로 8.0% 증가
- 공급 : 전년대비 14.5% 증가한 5,321千톤(생산/수입 : 35/65)
 - ┌ 생 산 :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 신·증설 시설 본격가동으로 30.8% 증가
 - └ 수 입 : 국내생산 대폭증가로 7.1%만 증가, 수입비중이 69→65%로 감소

〈'93년도 LPG 수급계획〉

(단위 : 천톤)

	프 로 판			부 탄			합		
	1992	1993	증감(%)	1992	1993	증감(%)	1992	1993	증감(%)
수 요 (공업원료)	2,871 (154)	3,329 (200)	16.0	1,772 (490)	1,913 (500)	8.0	4,643 (644)	5,242 (700)	12.9
공 급	생 산	402	525	1,039	1,360	30.9	1,441	1,885	30.8
	수 입	2,438	2,842	16.6	770	594	△22.9	3,208	3,436
합	2,840	3,367	18.6	1,809	1,954	8.0	4,649	5,321	14.5
기 말 재 고 (지속일수/수요)	190 (24)	228 (25)	20.0	90 (19)	131 (25)	45.6	280 (22)	359 (25)	28.2
정 부 비 축 (지속일수/수입소요)	89 (16)	89 (14)	-	23 (23)	23 (35)	-	112 (17)	112 (16)	-

〈註〉 정부비축분 지속일수는 전년도 공업원료용제의 수입소요(수요-생산) 기준임.

■ 신간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2

대한석유협회 홍보실